

## 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53호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01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

#### 1.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25년 1월 1일

나. 표준지 수 : 600,000필지

다. 공시사항

표준지의 소재지, 면적(m<sup>2</sup>), 지목, 지리적 위치, 이용상황, 용도지역, 주위환경, 도로상황, 형상 및 지세, 단위면적(m<sup>2</sup>)당 가격(필지별 내용 생략)

라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(<https://www.realtyprice.kr>) 또는 표준지 소재 관할 시·군·구청 민원실

#### 2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상 이의신청 방법

가.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(팩스, 우편)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하거나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(이의신청 기간: 2025.1.24.~2.24.).

다.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(2024.12.19.~2025.1.13.)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#### 3.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

표준지공시지가 공시(처분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